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66

발의연월일: 2025. 3. 10.

발 의 자: 윤준병 · 임광현 · 주철현

송옥주 • 이원택 • 조계원

박민규 · 정동영 · 허 영

신영대 · 김태선 · 문대림

황명선 · 김윤덕 의원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 축사용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토지, 조합법인 등 농어업 관련 기업 및 개인에게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등을 감면하는 조항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농어업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감면이 필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 감면사항 중 어업용 토지, 축사용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토지,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 불안정 해소와 식량안보 확보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농식품 투자조합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3조).
- 나. 폐업을 위해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69조의2).
- 다.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함(안 제69조의3).
- 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1조).
- 마.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2030 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2조).
- 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2030년 12위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7조의2).
- 사.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 장함(안 제89조의3).
- 아. 농어촌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시 부여하는 양도소득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99조의4).
- 자.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우수 선화주

- 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소득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 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04조의30).
- 차. 유기농어업자재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영(零)의 세율 적용을 2030 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05조).
- 카. 농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기자재 및 직수입 어업용 기자재,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30년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06조)
- 타.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06조의2).
- 파.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11조).
- 하. 연안화물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에 대한 조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11조의5).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5년"을 각각 "2030년"으로 한다.

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69조의3제1항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2026년"을 각각 "2031년"으로 한다.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104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2026년"을 "203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111조의5제1항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 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1. 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 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 획자"라 한다)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 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 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 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에 따 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 소기업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 다)에 2025년 12월 31일까 -----2030년-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2. ~ 7. (생략)
- ②·③(생략)
- ④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 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 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 장기업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 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 니한다.
- ⑤ (생략)
-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

| 2. ~ 7. (현행과 같음)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 |
| 4 |
| |
| |
| |
| |
| |
| |
| |
| <u>2030년</u> |
| |
| |
| |
| |
| ⑤ (현행과 같음) |
| |
|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 |
| 소득세의 감면) ① |
| |
| |
| |
| |
| |
| |
| |
| |
| |
| |
| |
| 00001 |
| <u>2030년</u> |
| |
| |
| |

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④ (생 략)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 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u>.</u>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 |
|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
|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전에 해당 어업용 토지등 외의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③ (생 략)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어업권·어업원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

| | 현행과 같음) | |
|-------------------------------|------------------------|----|
| ② · ③ (| 2007 年日/ | |
| | | 받는 |
| 제71조(영농지 | | |
| 제71조(영농지 농지 등에 | 나 녀등이 증여팀 | |
| 제71조(영농지 농지 등에 | 나녀등이 증여년 대한 증여세의 | |
| 제71조(영농지 농지 등에 | 나녀등이 증여년 대한 증여세의 | |
| 제71조(영농지 농지 등에 | 나녀등이 증여년 대한 증여세의 | |
| 제71조(영농지 농지 등에 | 나녀등이 증여년 대한 증여세의 | |
| 제71조(영농지 농지 등에 면) ① | 아녀등이 증여 대한 증여세의 | |
| 제71조(영농지 농지 등에 면) ① | 마녀등이 증여 대한 증여세의 | |
| 제71조(영농지 농지 등에 면) ① | 아녀등이 증여 대한 증여세의 | |
| 제71조(영농지 농지 등에 면) ① | 아녀등이 증여 대한 증여세의 | |
| 제71조(영농지 농지 등에 면) ① | 아녀등이 증여 대한 증여세의 | |

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영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1. ~ 3. (생략)
- ② ~ ⑨ (생 략)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답인세법」 제13조 및 같은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

| <u>2030년</u> |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
| ② ~ ⑨ (현행과 같음) |
|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
| 세 과세특례) ① |
| |
| |
| <u>2030년</u> |
| |
| |
| |
| |
| |

니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 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 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 진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 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 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 한 금액에 100분의 9[해당금 액이 20억원(2016년 12월 31 일 이전에 조합법인간 합병하 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 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 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2]의 세율 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 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 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

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 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 1. ~ 8. (생 략)
- ② ~ ⑥ (생 략)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민이 「농어 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 1. ~ 8. (현행과 같음)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
|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
| 대한 비과세) |
| |
| |
| 2030년 |
| |
| |
| |
| |
|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
|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
| 저율과세 등) ① |
| |
| |
| |
| |
| |
| |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 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 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 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 고, 2026년 1월 1일부터 2026 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 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 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

② (생 략)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 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 (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 <u>20</u> |
|--------------------------|
| <u>30년</u> |
| |
| <u>2031년</u> <u>2031</u> |
| <u>년</u> |
| |
| |
| |
| |
| |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
| 세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 |
| 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① |
| |
| |
| |
| |
| 2030년 |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 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 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 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 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 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 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 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 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 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 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 2. (생략)

② ~ ⑧ (생 략)

제104조의30(우수 선화주기업 인 기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해운법」 제47 조의2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물류 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 한 기업으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 1. • 2. (현행과 같음) |
|---------------------|
| ② ~ ⑧ (현행과 같음) |
| 제104조의30(우수 선화주기업 인 |
| 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
| 세액공제) ① |
| |
| |
| |
| |
| |
| |

이 조에서 "화주기업"이라 한 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 제2 5조제1항에 따른 외항정기화물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수출입을 위하여 지 출한 운송비용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직전 과세연 도에 비하여 증가한 운송비용 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을 더한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 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 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 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 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다.

- 1. · 2. (생략)
- ② · ③ (생 략)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 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

| <u>2030년</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 1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 |
| <u>♦</u>) ① |
| |

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 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 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 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 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5 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 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1. ~ 6. (생략)
- ② (생략)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5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 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20; | 30 |
|--------------------|-----------|
| 년 | |
| | |
| 1. ~ 6. (현행과 같음) | |
| ② (현행과 같음) | |
|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등) |
| ① | |
| | |
| | |
| | |
| • | |
| 2030년 | |
| <u> 2000 년</u> | |
| 901 | O 1 |
| <u>20</u> 3 | <u>31</u> |
| <u>년</u> | |
| | |
| | |
| | |
| | |
| | |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 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 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 1. ~ 13.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22호는 2024년 1 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 1. ~ 22. (생략)
- ③ ~ ⑤ (생 략)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저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 1. ~ 13. (현행과 같음) |
|--|
| 2 |
| |
| |
| <u>2030년</u> |
| |
| |
| |
| 1 - 99 (천체코 가 이 |
| ~ 2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 네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
|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
|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
| 등) ① |
| |
| |
| |
| |
| |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

- 1. 2. (생략)
- ② ~ ② (생 략)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 기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 1. 2. (생략)
- ② (생략)

제111조의5(연안화물선용 경유에 제111조의5(연안화물선용 경유에

| <u>2030년</u> |
|--|
| |
| <u>.</u> |
| 1. · 2. (현행과 같음) |
| |
| ② ~ ② (현행과 같음) |
| |
| ② ~ ② (현행과 같음) |
| ② ~ ② (현행과 같음)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 |
| ② ~ ② (현행과 같음)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 |
| ② ~ ② (현행과 같음)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 |
| ② ~ ② (현행과 같음)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 세의 면제) ① |
| ② ~ ② (현행과 같음)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 세의 면제) ① |
| ② ~ ② (현행과 같음)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 세의 면제) ① |
| ② ~ ② (현행과 같음)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 세의 면제) ① |
| ② ~ ② (현행과 같음)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 세의 면제) ① |
| ② ~ ② (현행과 같음)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 세의 면제) ① |

| 대한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감 |
|---------------------------|
| 면) ① 「해운법」 제24조제1 |
| 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
| 자로 등록한 자(이하 "내항 화 |
| 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
| 사업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
| 사용할 목적으로 <u>2025년</u> 12월 |
| 31일까지 「한국해운조합법」 |
| 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 |
| (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 |
| 다)에 직접 공급하는 「교통・ |
| 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 |
| 항제2호에 따른 경유(이하 이 |
| 조에서 "경유"라 한다)에 대해 |
| 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 |
| 을 리터당 56원 감면한다. |

② ~ ⑤ (생 략)

|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 |
|-----------------|
| 면) ① |
| |
| |
| |
| |
| <u>2030년</u> |
| |
| |
| |
| |
| |
| |
| |
|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